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948호 2016. 12. 2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041호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042호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삼척시 조례 제1043호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5
- 삼척시 조례 제1044호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 8
- 삼척시 조례 제1045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삼척시 조례 제1046호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15
- 삼척시 조례 제1047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 21
- 삼척시 조례 제1048호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삼척시 조례 제1049호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삼척시 조례 제1050호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33
- 삼척시 조례 제1051호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삼척시 조례 제1052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삼척시 조례 제1053호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삼척시 조례 제1054호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삼척시 조례 제1055호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49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5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52
- 삼척시 고시 제159호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 55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62호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6
- 삼척시 공고 제872호 동해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삼척시 4차)
사업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62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1호 도로의 지정·공고 ----- 63

공 람									
--------	--	--	--	--	--	--	--	--	--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41호(의원 발의)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7월 5일”을 “6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42호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①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43호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성”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충전인프라 정보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구성 구축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관용차량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의 교체·구입 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와 출자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한국 산업표준(KS) 규격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성 중 충전기를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2.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기 설치대상 시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다음 각 호에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2. 공영 주차장
3. 공동주택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의 경비지원에 관해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44호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삼척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중전의 원칙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10년 이상 삼척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출향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시책·관광·특산물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
3. 출향시민 화합 등을 위하여 출향단체 주관으로 시 관내에서 개최하

는 체육, 문화 등의 행사

4.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지원

제4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삼척시민증(이하“출향시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절차) ① 출향시민증을 발급 받으려는 출향시민 또는 출향단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향시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출향시민증을 발급한다.

제6조(출향삼척시민증 서식 등) ① 출향시민증의 규격·계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향시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취소) 시장은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라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유료시설의 요금 감면) 시장은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삼척시민에 준하는 요금 감면을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_____ 접수일자 _____

신청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출향단체)	단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수령방법 []신청기관 방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_____)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향삼척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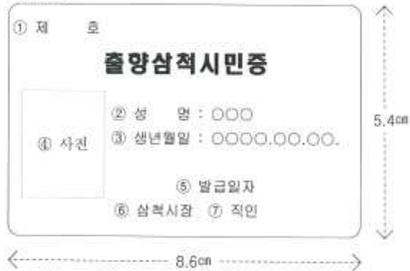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증명사진 1장
 2.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제출
 - 가. 가족관계증명서
 - 나. 기본증명서
 - 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3. 별지 제2호(출향단체 신청 시)

[별표 제1호]

출향삼척시민증 규격·제식·기재사항

<전면>



<후면>



<기재사항>

- ① 발급번호(예 : 제2016-1호)
- ② 한글성명
- ③ 생년월일
- ④ 사진
- ⑤ 발급일자 : 연월일
- ⑥ 발급기관장
- ⑦ 발급기관 직인
- ⑧ 안내문구
- ⑨ 기타사항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45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46호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행복쉼터”(이하 “행복쉼터”라 한다)란 2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행복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통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은 제외)
 2. 공동거주 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등록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행복쉼터를 설치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5명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독거노인 자택 등으로써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겨울철 한파·대설주의보 발령·폭염발생·화재로 인한 가옥소실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행복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 ② 시장은 행복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인원,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경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행복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분기별
2. 난방비 : 상·하반기 연 2회

- 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 4.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수시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복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1. 행복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 2. 제4조제2호의 일시적인 보호가 해소된 때
-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행복쉼터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복쉼터 변경 신고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독거노인 행복쉼터 등록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시설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 사유			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노인 행복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리·동장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호서식]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독거노인 행복쉼터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행복쉼터 입주를 희망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명·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변경 신고서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주자			
	시설의 대표자	성명 주소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은 제외)	수수료 없음
-------------	---	-----------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47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으로서 한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1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 ① 목욕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목욕권을 읍면동장에게 배부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시중 목욕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6조(지급시기) 시장은 목욕권을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반기 중에 전입하거나 80세에 도달한 노인의 경우에는 전입일 또는 80세에 도달한 달에 해당 반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한다.

제7조(목욕권 사용) 목욕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정산 등) ① 시장은 한국목욕중앙회 삼척시지부장(이하 “목욕중앙회시지부장”이라 한다)과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중앙회시지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목욕비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목욕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목욕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20 년도 분기 No.
어 르 신 목 욕 권
(원 권)
삼 척 시 장 <input type="text" value="적인"/>

(뒷면)

유 의 사 항
○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
○ 삼척시 관내 목욕업소에서만 이용 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목욕비 청구서(제8조제2항 관련)

사업명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업소명		대표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사업기간	20 ~ 20		
<p>「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p>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신고필증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동장사본		

[별지 제3호서식]

목욕권 수불대장(제10조 관련)

(본청)

구분	일자	일련번호 (목욕권)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보유매수	지급매수	잔량매수	
계						
본청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49호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4항 본문 중 "자들"을 "사람 가운데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삼척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50호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51호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6항 중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행
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52호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하장분소 :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1-10

제10조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53호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의 “변경,해지”를 “변경,해제”로 한다.

제6조 제1항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54호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6개월”을 “1년 이상”으로, “별표1,별표2”을 “별표1”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2017년 6월30일까지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산후조리원 이용료 보조 기준(제5조 관련)

구분	보조기준	보조금 지급한도
삼척시 1년 이상 거주 산모	2주(14일) 기준	180만원

* 참고사항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우리시 거주 여부는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다. (단, 국적 미취득 다문화 가정의 출산모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우리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이용료 등의 보조) ①시장은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1,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의 보조) ①----- -----1년 이상----- -----별표1----- ----- -----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체
 - 공공산후조리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출산·육아환경의 개선을 통한 출산인구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보조함으로써 산모 지원강화
-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 : 2,250,000천원
 -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
 - 1,800,000원 × 250명 = 450,000,000원
- 다. 제원조달 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손 태 도
연락처	(033) 570 - 46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산모 조리원 이용료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지방세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이윤자 부담 등)						
계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붙임2】

시민중심! 행복삼척! 안전도시 삼척!



삼척시



수신 삼척시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6A강원삼척063)

- 1. 건강증진과-11873(2016. 10.20.)호와 관련입니다.
-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이용료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16.10. 26.(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
-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 3. 저장 버튼 오른쪽의 기안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1566-3287 또는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16A강원삼척063) 1부, 끝.

삼척시장

주무관 이성기(국무담당) 사회복지과장 (전화 2016. 10. 20.)

참조자

시행 사회복지과-62015 (2016. 10. 20.) 접수 건강증진과-11909 (2016. 10. 20.)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342 팩스번호 033-570-3198 / ghs1120@korea.kr / 대한민국 공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강원삼척063		
정책명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이용료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삼척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이춘화	전화번호 033-570-46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건강증진과)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저출산시대 출산을 제고 및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율 확대지원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삼척시 1년이상 거주 산모'로 제한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 여성의 출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삼척시 1년이상 거주 산모 및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1년이상 삼척시로 되어있는 산모' 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혼이주자의 경우 국적취득과 임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6 년 10월 26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삼척시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심근화/033-570-3342)			
건강증진과장 귀하			

【붙임 3】

시민중심! 행복실적! 안전도시! 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안 규제심사 결과 회신(2016-규제-052)」

1. 건강증진과-11372(2016.10.7.)호의 규제심사 요청건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규제사항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역경제과장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삼척시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추무관 규제개혁담당 지역경제과장 2016. 10. 11.

참조자

시행 지역경제과-31279 (2016. 10. 11.) 접수 건강증진과-11505 (2016. 10. 11.)

주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552 팩스번호 033-570-3140 / describe@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붙임 4】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상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6.)에서 의결된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임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6년 12월 23일

삼척시 조례 제1055호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

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센터의 시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제7조 1(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관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 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고용센터 등 인력개발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제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2(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①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과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에 공이 큰 기업과 기관·단체 및 민간인에게 「삼척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 및 위탁 등에 대해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6 - 15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40-14 외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2.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0-10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40-14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언장골), 일련번호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0-1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38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언장골), 일련번호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413-10	강원도 삼척시 뒀나루길 301-38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후진) 옛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61-6	강원도 삼척시 남산길 33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남산) 명칭활용(기존 도로명)	
5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1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22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언장골), 일련번호활용	
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18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1길 88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7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60-12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6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중심부 도로(기존도로명)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55	폐지	20161223	건물말소	20090626	지역지명(심방, 금계)복합 활용	
9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09-23	폐지	20161223	건물말소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 (기존도로명)	
10		이	하	여	백		
11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구분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0-10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40-14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언장골), 일련번호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0-1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38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언장골), 일련번호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413-10	강원도 삼척시 뒀나루길 301-38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후진) 옛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61-6	강원도 삼척시 남산길 33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남산)명칭활용(기존도로명)	
	5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1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22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언장골), 일련번호활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18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1길 88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일련번호방식)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60-12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6	20161223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기존도로명)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55	폐지	20161223	건물말소	20090626	지역지명(심방, 금계)복합 활용	
폐지	9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09-23	폐지	20161223	건물말소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삼척시 고시 제2016-159호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삼척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3.
삼척시장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458,086,552	458,052,751	33,801	0.01%
일반회계		416,175,926	415,886,540	289,386	0.07%
특별회계		41,910,626	42,166,211	△255,585	△0.61%
	상수도사업	13,001,821	14,367,849	△1,366,028	△9.51%
	하수도사업	4,345,508	3,445,600	899,908	3.99%
	주택사업	50,000	50,000	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8,509,800	19,973,736	△1,463,936	△7.33%
	천연가스생산기초	500,000	749,000	△249,000	△33.24%
	의료보호기금운영	1,582,651	1,593,334	△10,683	△0.67%
	자활기금	1,389,326	1,287,883	101,443	7.88%
	농공지구조성사업	103,000	108,000	△5,000	△4.63%
	주차장사업	322,020	284,950	37,070	13.01%
	임대아파트관리운영	2,106,500	305,859	1,800,641	588.72%

삼척시 공고 제2016 - 862호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차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우리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제2조)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지식재산 진흥시책 수립(제4조)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제5조)

시장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지역경제과
- 전 화 : (033) 570-3367 ■ FAX : (033) 570-3140

4. 참고사항

- 불임문서
 -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 제출서 1부.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척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시책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 실시
2.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및 확충을 위한 사업
3.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 홍보활동

제6조(지식재산 보호 강화)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활용 촉진) 시장은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지식재산관련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6-872호

동해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삼척시 4차)

사업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삼척시 성남동 90-6번지 일원의 동해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삼척시 4차)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09. 29.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6. 12. 22.

삼척시장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삼척시 4차)
2. 사업의 위치 : 삼척시 성남동 90-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윤곡동, 한국도로공사)】
4. 공고내용 : 재결서정본 송달
재결일 : 2016. 09. 29.
5. 공고기간 : 2016. 12. 22. - 2017. 01. 06. (15일간)
6.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삼척시청 건설과 (☎033-570-3498)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이필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07-15	

(2면 중 제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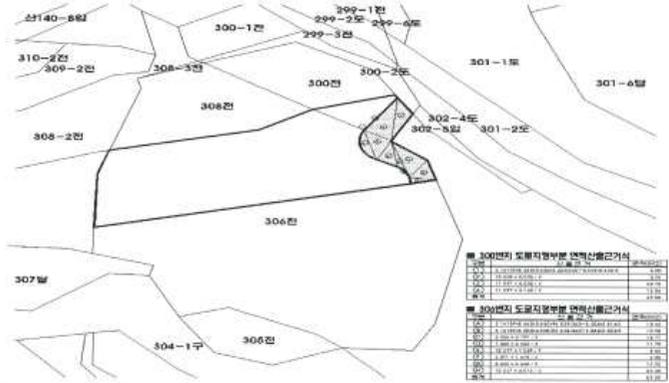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